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9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박승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박강산, 박철성,
서상열, 유정희, 이용균,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수량이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의무 대상시설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가 있으나, 급속충전기는 설치비용이 비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크고,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 또한,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세분화하여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과 주차장을 대상에 명시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함(제7조의4제2항)
- 나. 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제7조의4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충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2.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u>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p>	<p>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의 설치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1.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u>공중이용시설</u>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p> <p>2.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u>공공건물과 주차장</u>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p> <p>④ 제2항과 제3항-----</p>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
여 계산한다.

④·⑤ (생략)

-----.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제2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비율에 따른 충전 시설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3항에 “급속충전시설 설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본다”는 규정을 추가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